

의 안 번 호	1490	【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검 토 보 고 서		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8.(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1. 9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1. 30.(금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(법률 제12687호, 개정 2014. 5. 28.)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. 12. 31. 자로 만료되므로,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존속기한 신설(안 제7조)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의료급여법」 규정에 근거하여
-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음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 거 법 규

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·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·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